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32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 장종태・박용갑・이수진

김기표 · 김 윤 · 황정아

장철민 • 박정현 • 조승래

안규백 · 정동영 · 김남희

김선민 • 이워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해야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못해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2 항).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 4. (생 략)

③ ~ ① (생 략)

개 정 안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현 행과 같음)

②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수술을 하는 장면을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